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6. 29.(화) / 총 10매(본문3, 참고7)	
담당 부서	도시활력 지원과	담 당 자	• 과장 박용선, 사무관 박가나, 주무관 이현주 • ☎ (044)201-3722,3723	
보 도 일 시		2021년 6월 3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국토 면적의 16.7%(17,769km²) 는 ‘도시지역’

- ‘19년 대비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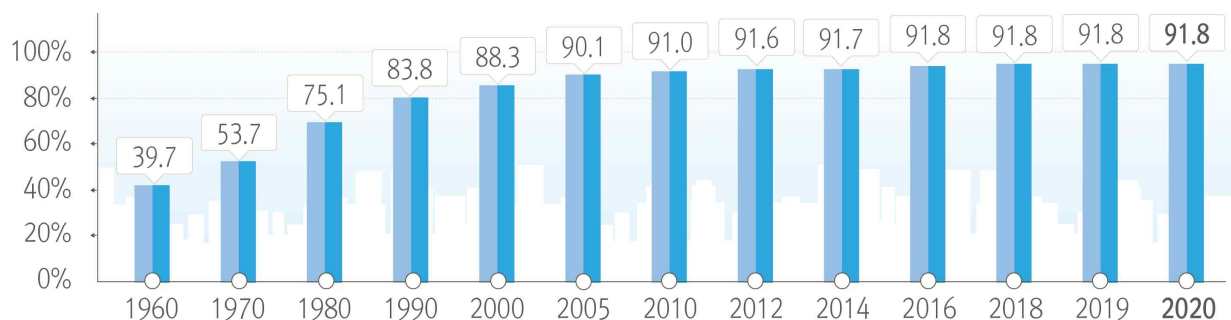
□ 20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205km²,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7,769km²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3만 명 중 4,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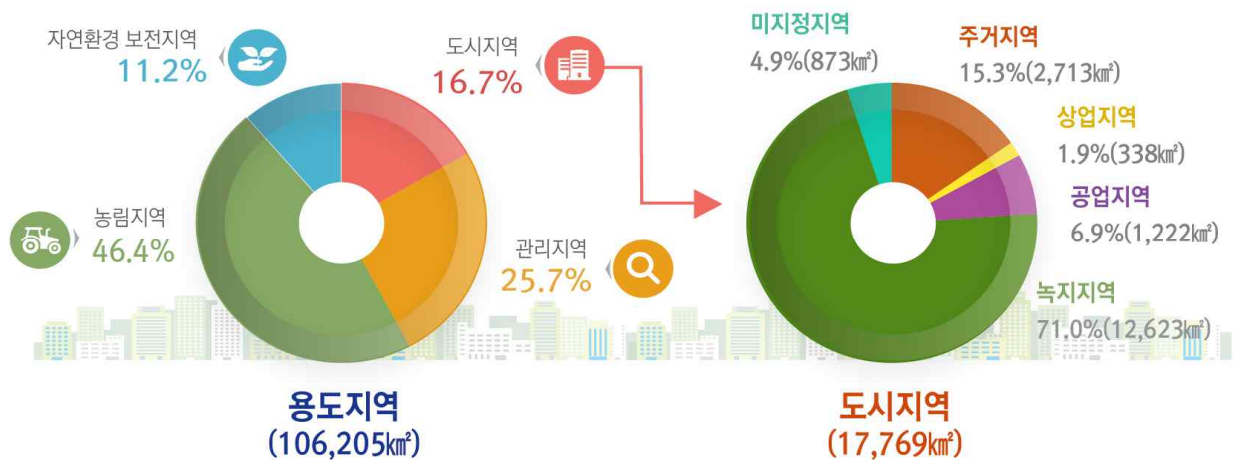


1. 용도지역 지정 현황

□ 도시지역 17,769km²(16.7%), 관리지역 27,310km²(25.7%), 농림지역 49,256km²(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0km²(11.2%)로 전체 면적은 106,205km²로 조사되었다.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13km²(15.3%), 상업지역 338km²(1.9%), 공업지역 1,222km²(6.9%), 녹지지역 12,623km²(71.0%), 미지정 지역* 873km²(4.9%)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지역



□ 전년('19)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2.7km²), 공업지역(3.5km²), 상업지역(0.2km²)은 증가하고 녹지지역(△9.4km²)은 감소하였다.

○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49.4km²)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45.2km²), 자연환경보전지역(△15.7km²)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관리지역은 전북 완주(4.4km²), 경기 안성(4.3km²), 여주(4.1km²) 등 증가

** 농림지역은 울산 울주(△8.2km²), 전북 완주(△4.6km²), 경기 여주(△4.5km²) 등 감소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철원(△11.4km²), 양양(△2.8km²) 등 감소

2. 개발행위허가 현황

- 개발행위*허가는 '19년 대비 4.5% 감소한 249,327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153,511건(61.6%), '토지형질변경' 60,288건(24.2%) 순이며,

*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공작물 설치, 토석의 채취 등

** (연도별 개발행위 건수) '15년 28만건 → '16년 31만 → '17년 31만 → '18년 31만 → '19년 26만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0,999건(241.6km²)로 가장 많고, 전남 25,262건(162.8km²), 경북 23,866건(343.0km²) 순으로 파악되었다.
- 시·군·구 중에서는 화성시 10,038건(37.0km²), 양평군 5,869건(12.9km²), 강화군 5,670건(7.4km²)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736.7km²으로 '19년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 교통시설(2,252.1km²)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95.6km²), 공간시설(1,198.2km²), 공공문화체육시설(987.0km²) 순으로 파악되었다.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86.8km²로 가장 넓고, 경북 793.8km², 전남 720.3km² 순으로 파악되었다.
-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시 124.9km², 화성시 124.2km², 용인시 120.5km² 순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 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박가나 사무관(☎ 044-201-37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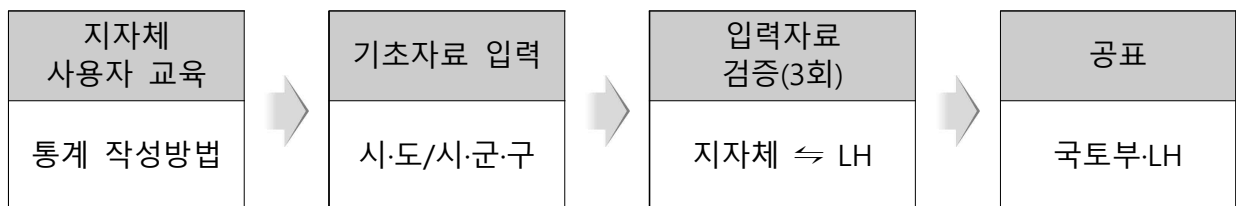
- 全 국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수록하여 관련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작성기준일 : 직전년도 12월31일)

□ **주요내용**

- 발표주기 : 연도별로 작성하여 매년 6~7월경 발표
- 통계내용 :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개발행위허가 등(책자 발간)
- 작성기준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도시계획 “고시 및 공고” 자료
- 작성방법 :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도시계획 현황통계시스템(UPSS)에 관련 자료 전수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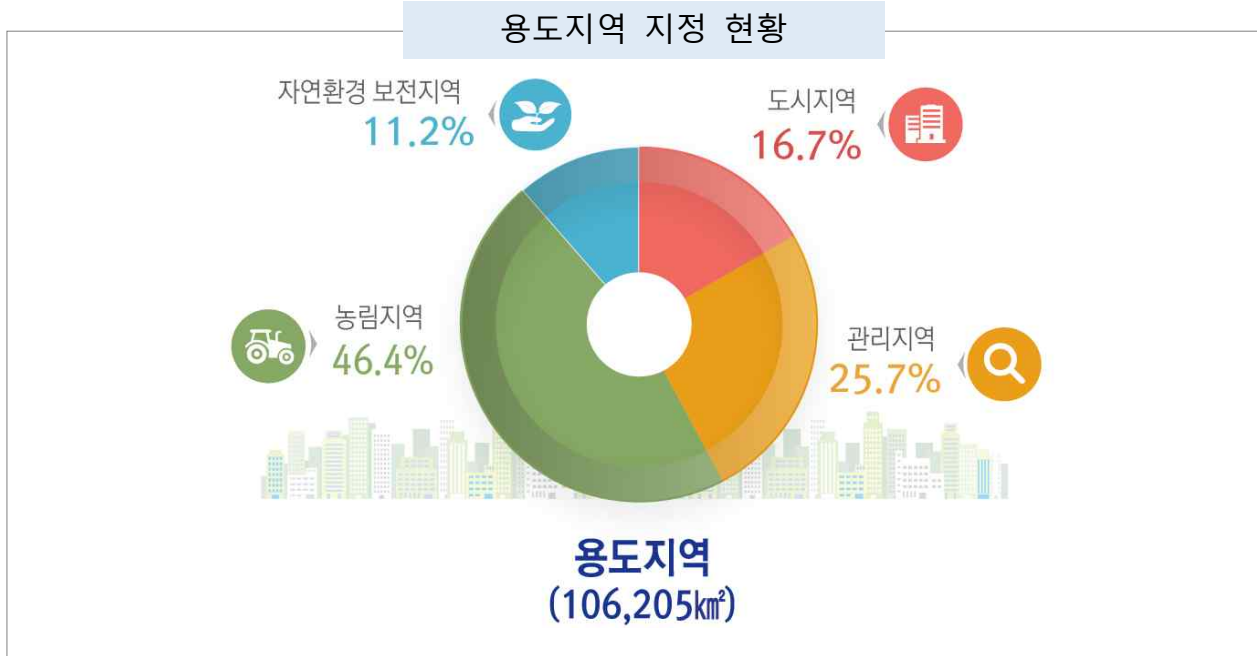
□ **2020년 통계 공표계획**

- 공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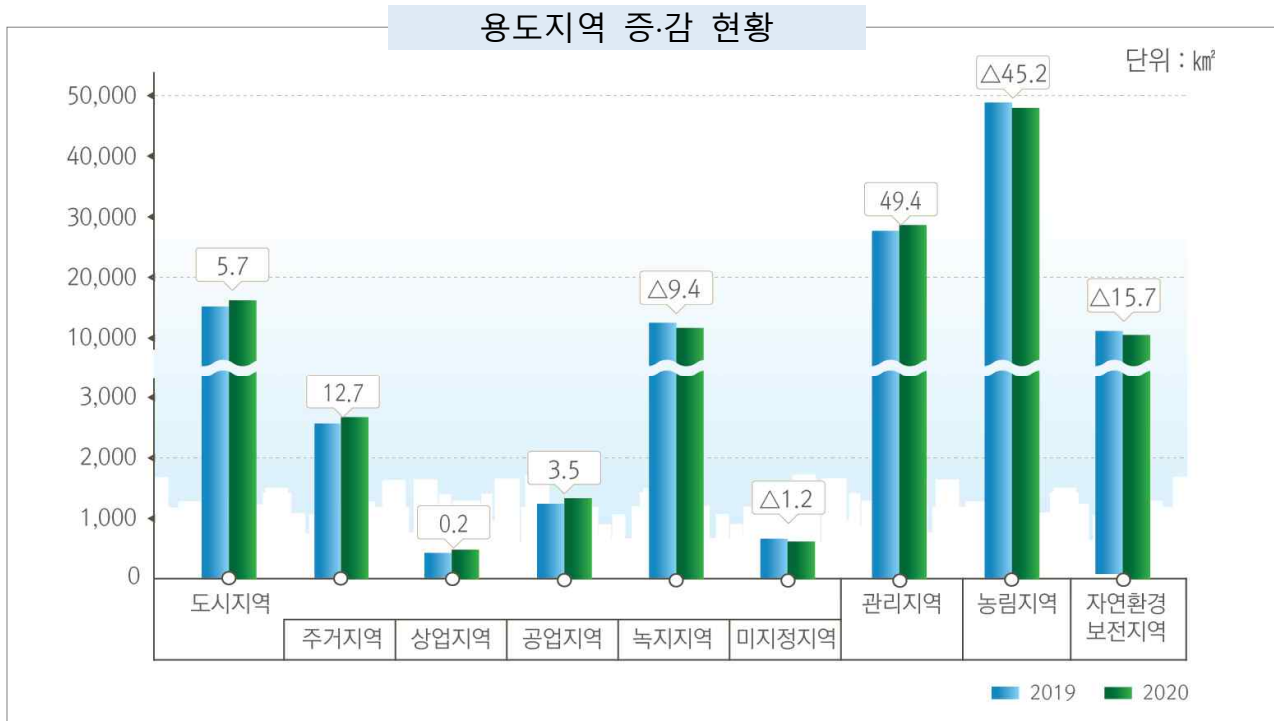


□ **추진일정**

- '21. 3~4월 : 지자체 교육 및 통계자료 입력
- '21. 5~6월 : 자료검증 및 수정
- '21. 6월 : 「2020 도시계획현황」 통계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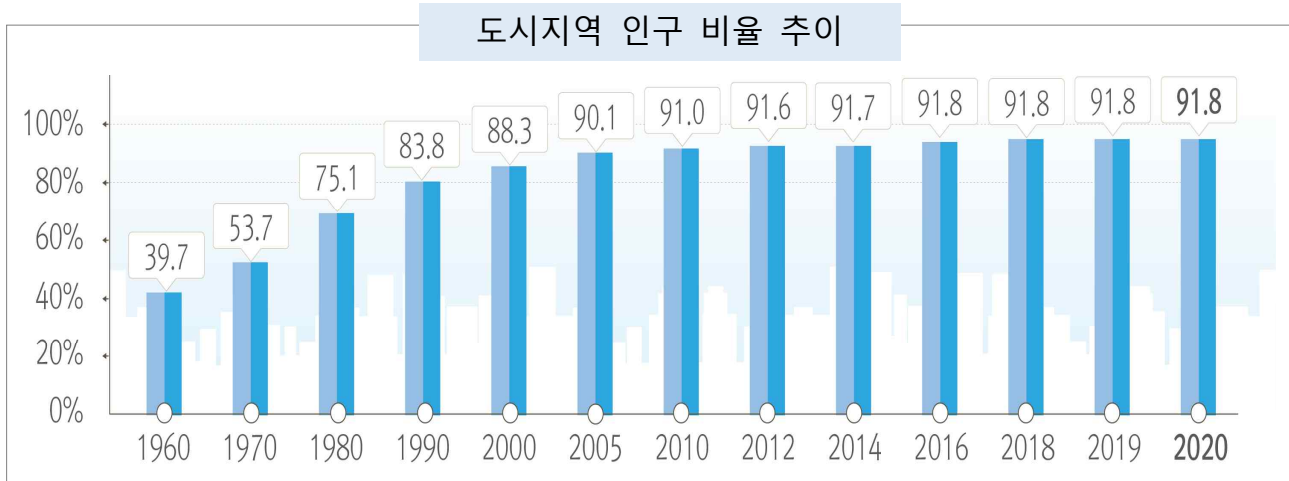


시도	전체면적 (km ²)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km ²)	비율(%)	면적(km ²)	비율(%)	면적(km ²)	비율(%)	면적(km ²)	비율(%)
전국	106,204.7	17,769.1	16.7	27,309.9	25.7	49,256.1	46.4	11,869.5	11.2
서울	605.7	605.7	100.0	0.0	0.0	0.0	0.0	0.0	0.0
부산	993.5	940.8	94.7	0.0	0.0	0.0	0.0	52.7	5.3
대구	883.5	799.3	90.5	0.0	0.0	35.9	4.1	48.3	5.5
인천	1,105.5	529.7	47.9	315.0	28.5	260.8	23.6	0.1	0.0
광주	501.2	480.1	95.8	17.6	3.5	3.5	0.7	0.0	0.0
대전	539.7	496.1	91.9	9.4	1.7	27.7	5.1	6.6	1.2
울산	1,144.6	761.7	66.5	64.4	5.6	274.9	24.0	43.5	3.8
세종	465.5	142.5	30.6	177.1	38.1	143.8	30.9	2.0	0.4
경기	10,382.0	3,378.7	32.5	3,031.6	29.2	3,538.2	34.1	433.6	4.2
강원	16,862.4	1,029.7	6.1	3,278.1	19.4	10,869.3	64.5	1,685.3	10.0
충북	7,406.5	736.3	9.9	2,267.1	30.6	3,571.6	48.2	831.5	11.2
충남	8,752.2	909.0	10.4	3,145.5	35.9	4,004.6	45.8	693.1	7.9
전북	8,129.9	885.6	10.9	2,574.7	31.7	3,987.1	49.0	682.4	8.4
전남	15,440.4	1,719.4	11.1	3,456.4	22.4	6,345.4	41.1	3,919.2	25.4
경북	19,128.7	1,880.0	9.8	4,991.2	26.1	11,126.0	58.2	1,131.4	5.9
경남	11,812.8	2,004.8	17.0	2,895.7	24.5	4,959.3	42.0	1,952.9	16.5
제주	2,050.7	469.7	22.9	1,086.2	53.0	107.9	5.3	386.9	18.9



(단위 : km²)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km²)	전년대비(%)
도시지역	17,763.4	17,769.1	5.7	0.0
주거지역	2,700.7	2,713.4	12.7	0.5
상업지역	338.0	338.2	0.2	0.1
공업지역	1,218.9	1,222.4	3.5	0.3
녹지지역	12,631.9	12,622.5	△9.4	△0.1
미지정지역	873.9	872.7	△1.2	△0.1
관리지역	27,260.5	27,309.9	49.4	0.2
농림지역	49,301.3	49,256.1	△45.2	△0.1
자연환경보전지역	11,885.2	11,869.5	△15.7	△0.1
합 계	106,210.4	106,204.7	△5.7	0.0



□ 도시지역 인구 현황

시도	전체인구(명)	도시지역인구(명)	비도시지역인구(명)	도시지역 인구비율(%)
전국	51,829,023	47,570,964	4,258,059	91.78
서울	9,668,465	9,668,465	0	100.00
부산	3,391,946	3,391,946	0	100.00
대구	2,418,346	2,413,450	4,896	99.80
인천	2,942,828	2,875,877	66,951	97.72
광주	1,450,062	1,450,062	0	100.00
대전	1,463,882	1,463,882	0	100.00
울산	1,136,017	1,133,881	2,136	99.81
세종	355,831	323,806	32,025	91.00
경기	13,427,014	12,380,374	1,046,640	92.20
강원	1,542,840	1,276,651	266,189	82.75
충북	1,600,837	1,262,746	338,091	78.88
충남	2,121,029	1,573,042	547,987	74.16
전북	1,804,104	1,468,963	335,141	81.42
전남	1,851,549	1,324,815	526,734	71.55
경북	2,639,422	2,059,868	579,554	78.04
경남	3,340,216	2,891,466	448,750	86.57
제주	674,635	611,670	62,965	90.67

□ 개요

- (목적)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발행위의 종류】



- 연혁
 - 2000년 : 도시지역 대상으로 처음 도입
 - 2002년 : 국토계획법 제정 시 전 국토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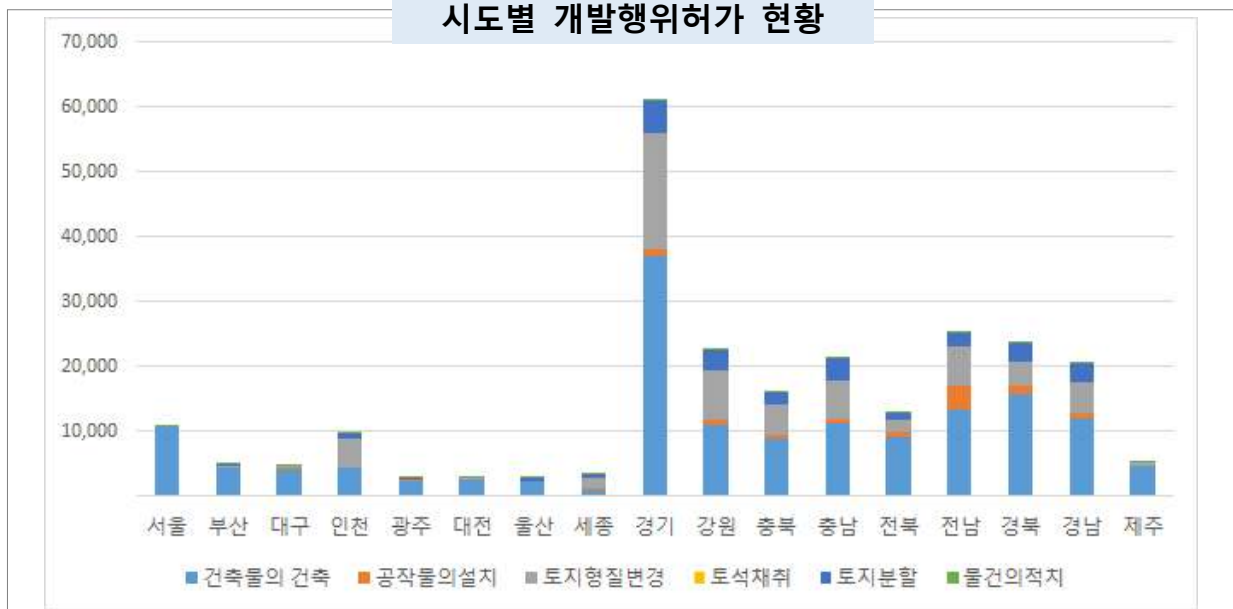
□ 개발행위허가 대상

-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옹벽, 굴뚝, 광고탑 등)
-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 ④ 토석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⑤ 토지분할
 - * 녹지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등
-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단위 : km²)

시도		합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전국	2020	249,327	1,823.5	153,511	1,465.8	10,665	34.0	60,288	120.5	270	5.1	24,009	194.9	584	3.2
	2019	261,203	2,103.2	157,452	1,655.1	9,646	24.4	68,389	164.6	322	6.8	24,536	249.8	858	2.6
서울		10,786	55.4	10,615	55.0	85	0.0	63	0.4	0	0.0	22	0.0	1	0.0
부산		4,742	22.4	4,339	21.6	62	0.1	279	0.5	1	0.1	60	0.1	1	0.0
대구		4,718	14.9	4,133	14.0	232	0.2	349	0.7	2	0.0	0	0.0	2	0.0
인천		9,681	229.2	4,281	221.2	71	0.2	4,480	4.6	0	0.0	798	3.1	51	0.2
광주		2,638	24.2	2,262	23.9	218	0.1	137	0.2	0	0.0	20	0.0	1	0.0
대전		2,687	33.5	2,472	33.3	49	0.0	158	0.2	0	0.0	7	0.0	1	0.0
울산		2,737	45.5	2,101	41.6	97	0.1	68	0.1	0	0.0	470	3.7	1	0.0
세종		3,156	19.1	976	11.2	73	0.1	1,606	2.6	1	0.0	499	5.2	1	0.0
경기		60,999	241.6	37,108	165.9	988	8.9	17,925	30.7	7	0.0	4,860	35.7	111	0.3
강원		22,423	199.6	10,848	153.2	978	3.4	7,607	14.5	46	3.0	2,903	25.2	41	0.4
충북		15,805	84.7	8,756	58.3	562	0.6	4,745	10.4	7	0.1	1,724	15.2	11	0.0
충남		21,239	105.1	11,165	61.8	605	1.3	5,935	12.9	31	0.2	3,492	28.8	11	0.0
전북		12,869	96.7	9,066	74.7	723	1.3	1,877	8.9	24	0.1	1,166	11.6	13	0.1
전남		25,262	162.8	13,318	120.9	3,621	14.2	6,004	16.0	64	0.6	2,181	11.0	74	0.1
경북		23,866	343.0	15,627	299.9	1,413	2.4	3,644	7.1	70	0.8	2,928	31.1	184	1.7
경남		20,483	124.8	11,855	90.6	868	1.2	4,831	8.7	16	0.1	2,858	24.1	55	0.2
제주		5,236	20.9	4,589	18.8	20	0.0	580	1.9	1	0.1	21	0.0	25	0.1

시도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단위 : km²)

시도	합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및공급 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 시설	환경기초 시설
전국	6,736.7	2,252.1	1,198.2	247.5	987.0	1,895.6	46.9	109.5
서울	305.9	108.1	65.6	7.3	42.7	74.3	0.9	7.1
부산	194.4	84.7	60.2	6.6	31.5	4.2	1.0	6.2
대구	117.2	55.4	31.1	4.8	16.0	6.4	0.3	3.2
인천	280.3	144.1	67.0	14.1	21.7	14.3	0.3	18.8
광주	134.1	38.7	35.6	7.9	14.9	34.6	0.1	2.3
대전	89.7	34.5	26.0	2.3	14.2	9.7	0.7	2.3
울산	128.1	51.9	50.8	6.4	14.7	1.3	0.2	2.7
세종	101.4	32.5	28.7	1.6	12.6	24.7	0.4	0.9
경기	1,286.8	402.4	290.6	28.4	244.4	298.0	7.6	15.2
강원	526.8	126.8	51.9	12.3	74.2	250.6	4.8	6.1
충북	418.8	115.4	57.6	5.1	72.6	158.7	4.2	5.2
충남	456.2	162.7	54.1	22.8	66.3	139.8	4.2	6.3
전북	409.0	127.4	64.7	6.4	62.5	139.7	2.6	5.6
전남	720.3	221.9	91.9	85.4	73.4	236.0	3.3	8.4
경북	793.8	220.7	92.2	16.5	113.3	332.6	10.4	8.3
경남	651.4	260.4	103.1	17.5	88.5	170.0	2.9	9.0
제주	122.5	64.4	27.1	2.1	23.5	0.7	3.0	1.8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등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 등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폐차장 등